

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 법률안

(전희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7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8.

발의자 : 전희경 · 김성원 · 민경욱
김승희 · 임이자 · 강석진
함진규 · 김선동 · 정태옥
이종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참의원의원선거법」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.

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「참의원의원선거법」이 「국회의원선거법」(법률 제551호) 부칙에 따라 1960년 6월 23일 폐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.

이에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「참의원의원선거법 시행에관한법률」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 법률안

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에關한法律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